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9. 12.(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불참위원 : 표철수 상임위원 (1인)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표철수 상임위원께서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8년도 제39차 전체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의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50-449)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중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한해서만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규제의 개선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경과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5월 30일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으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 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2의2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승인)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개정 연혁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13년 3월 23일 舊 방통위 조직인 미래부와 분할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 오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6조2의2 방송국에 대하여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공동체라디오에서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 조항에서 이러한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허가(승인)조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병렬로 병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유효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또한 2013년 전파법 개정 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이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이것을 허가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방송국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는 다 방통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모든 절차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조항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 조항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이번에 고치면서 같이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빠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방송사업자의 권한은 기술심사를 과기정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방송법에 허가(승인) 조항이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병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만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몇 년간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3년 3월 23일 舊 방통위에서 모든 일을 하던 부분이 일부 업무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법률 개정작업을 했는데 아마 그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참 어이가 없는 것인데 5년간이나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는 협행법에는 분명히 우리는 빠져 있고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하는 쪽으로 협행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5년간 존속됐다는 것, 그리고 협행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시도는 또 없었고, 그것은 관행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발견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인접조항을 사무처에서 검토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다 검토했더니 공동체라디오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에서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한은 모두 방통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 검토하면서 사무처에서 발견, 인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통위의 여러 가지 소관업무가 과기정통부, 그 당시 미래부지요.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된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관행으로만 하고 있는데 정말 협행법에 그 당시 업무를 이관하면서, 서로 분리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사무처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전파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혹시 이관에 따른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아직 존속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 조경식 사무처장

-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법령이 분할되면서 내용은 과기부장관이 허가한다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행사된 적은 없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팩트 확인자 말씀드리면 공동체라디오가 허가된 지가 10년째이기 때문에 그 이후 중간에 권한이 만약 행사됐다면 그때 발견됐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50-450)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극동방송 전북FM방송국, (재)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극동방송과 (재)기독교방송의 신규라디오방송국(FM)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 현황입니다. (재)극동방송은 '17년 4월 5일에 신청하였으며, 심사대상은 극동전북FM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방송구역은 전주시 일원과 정읍시 일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방송사항으로는 기독교 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이 되겠습니다. (재)기독교방송은 '17년 5월 29일에 신청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일원과 나주, 담양, 장성군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항으로는 기독교 선교음악을 위주로 한 음악방송, 설교, 교양 및 광고방송으로 보도, 시사, 해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재)극동방송은 '17년 4월 5일 신규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4월 6일부터 '18년 6월 28일까지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18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극동방송 대표자,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기독교방송입니다. '17년 5월 29일 신규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동년 5월 29일부터 '18년 4월 27일까지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기독교방송 대표자,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심사 예정이었던 (주)광주방송은 올해 8월 24일 허가 신청을 취하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취하사유로는 방송광고시장 침체 및 스마트미디어 급성장에 따른 라디오매체 경쟁력 하락,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방송제작 업무환경 변화를 들어 허가신청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극동방송 전북FM 방송국은 총 667.43점을 획득하였고, 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 방송국은 총 661.98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5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방송국에 대하여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신규허가 기본계획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총평입니다. 극동방송 및 기독교방송은 기존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송국 운영, 시설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전북·광주지역에 대한 방송국 설립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 위원회에 일반 청취자 구성 포함, 청취자 불만 처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정규직 충원 확대, 콘텐츠 품질 제고 및 지역성 구현 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독교방송에 대해서는 지역방송국 설립 취지 및 기독교 음악FM 특성을 고려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시청자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시청자 분야 위원 선임 및 의결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방송발전 등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수립,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청취자 권리 제고 및 난청 해소 방안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방송국 신규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모두 만족하며, 주파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부관사항에 첨부함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입니다.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모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재)극동방송 개별 허가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방송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로 허가신청 시 제출한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세 번째로 방송편성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네 번째로 이사장 및 임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및 전보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년 4월 말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재)기독교방송 개별 허가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성을 반영한 자제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계획 및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로 허가신청 시 제출한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공통 허가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기준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두 번째로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세 번째로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재)극동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발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시청자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전문가 및 시청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것, 두 번째로 청취자 권리 제고 및 난시청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세 번째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중 극동방송 전북FM방송국, 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는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과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 방송국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꼼꼼하게 심사해 준 사무처와 특히 바쁜 와중에 심사위원을 수락해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전문가들께서 신규허가, 재허가 이런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혼신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심사 위원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신청법인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지역 라디오방송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비율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께서 해당 법인들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 허가조건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총평에 나와 있지만 신청서 검토와 신청법인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설립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렸지만 광주방송의 경우 심사 직전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FM 신설을 철회한 것인데 그 이유로 광고시장 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라디오뿐만 아니라 지금 곧 재허가 심사를 하게 되는 DMB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매체들에 대해 운영 실태와 그러한 사업자들의 활성화 방안 내지는 제가 항상 허가심사 결과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허가를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이용이 저조하거나 없는, 즉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회수하는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말씀 없으십니까?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심사하느라고 고삼석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극동방송 외부감사 보고서를 보면 현금수익이 2016년 369억 원, 2017년 54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방송제작비는 2016년 5억 7,000만 원, 그리고 2017년에는 14억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도 중심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 콘텐츠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전북FM방송국은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는 허가조건은 매우 적절한 부관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극동방송 개별 허가조건 4항에 보면 아주 독특한 조항이 달려 있는데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 자녀들이 방송사의 임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임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들인 김요셉 씨가 재단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아드님이 대전지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LA 극동방송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장으로 해서 총 세 분이 극동방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지사장, 재단이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사는 비상근이사가 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럴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변동사항들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작년에 나간 극동여수FM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바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대부분의 방송사가 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극동방송은 재단이사장의 자녀들이 간부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 세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 자녀들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방통위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역시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성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개국일까지 제출받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오늘 FM 라디오 신규허가 안건을 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방송 정책을 제대로 펴 왔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방송, 특히 종교방송은 사업자들이 방송권역의 전국화를 위해 주파수를 사전에 확보한 뒤에 위원회에 신규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 심사하고 방송국을 개국해 주는 일종의 민원 처리형 허가를 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라디오 매체의 디지털화나 하이브리드 라디오 도입과 같은 라디오방송 스마트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TV 중심의 방송 정책을 펴 왔고, 라디오방송 광고는 자력으로 판매할 수 없어서 텔레비전 방송 광고와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방통위가 올해 라디오방송 효율화를 위한 라디오방송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연구반 운영 목표가 무엇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올해 국정과제로 라디오진흥자문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라디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TV 중심 쪽의 정책이 일관되게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을 짚어보고 라디오 진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자문기구 설치가 목표입니까? 그 내부에서 진흥 방안도 현재 논의할 예정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연말까지 라디오진흥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그 자문기구를 통해 라디오진흥 방법을 저희 쪽에서는 안에서 미션을 부여해서 그 부분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자문기구만 설치할 것이면 당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목표로 자문기구 설립이라고 두는 것은 굉장히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문기구 설치가 목적은 아니고 자문기구를 통해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과 의제와 정책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연구반 활동과 자문기구를 통해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극동방송이 제가 듣기로는 미국 선교재단으로부터 대부분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방송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증상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본사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붙임>자료 방송국 운영현황을 보면 극동제주, 대전, 창원방송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전과 창원방송국에서는 광고방송을 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증상에는 광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본사에서는 서울 지역 나가는 것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방송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엄격하게 허가를 할지, 허가를 하지 않을지 엄격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역성을 강화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넓히겠다,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극동방송 같은 경우 지역성을 강화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계획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2019년의 자체제작 비율이 6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편성 자체가 지역교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이어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계 분들이 나

와서 방송에 출연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궁금한 것이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을 우리가 허가조건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방송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것도 방송국이기 때문에 제작비 투자 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9년 극동방송 같은 경우 6,600만원, 2020년 7,300만원 정도, 2021년 7,700만원, 2022년에는 8,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 방송과 비교할 때 불교방송 예를 들어 보니까 방송국 1개당 평균 13억원 정도의 제작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방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방송사 규모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굉장히 적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늘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다른 종교방송에 비해 턱없이 제작비를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 종교방송은 특별히 시청자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맞습니다. 의무편성사업자는 종합편성사업자와 보도전문편성사업자, 홈쇼핑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업자가 되겠고,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은 의무사업자는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시청자위원회가 둘 다 없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서에서 낸 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시청자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계에 계신 분 내지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전문가나 시청자 의견을 대변할 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청자위원회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구성원들이 교계 인사를 위주이고, 또 기독교방송을 보면 대개 재능기부가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또 재능기부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방송전문가와 다양한 시청계층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유명무실하지 않는 내부자들끼리만 그렇게 한다면 무슨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공중파를 사용하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채용 문제인데 전북방송국, 또 이쪽은 광주방송국인데 두 방송국에서 지역인재를 몇 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신규인력을 뽑을 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선교방송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마다 주파수를 확보해서 우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때 지역방송국이니까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해 줄 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주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몇 명이나 채용하는지, 대개 기술적, 전파를 내보내기 위한 엔지니어 위주로 한두 명 정도 근무하도록, 3교대를 해야 하니까 주로 이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강화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PD나 또는 방송을 담당할 아나운서 등 이런 인재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요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본사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국은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들 위주 그다음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꾸준히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방송들이 지역방송국을 계속 신청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역인재 채용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만 또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중앙에서 파견이 아니고 또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율도 아까 보면 60% 지역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인력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이행되고 있는지를 허가 이후에 반드시 점검해서 이행실적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을 기회로 라디오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그것을 보는 동안은 몰입해야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없지요. 그러나 라디오의 경우에는 몰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수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정책들이 텔레비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라디오매체에 대해 정책적으로 소홀하기 쉬운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라디오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텔레비전은 다매체채널을 통해 수용하고 직접수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라디오방송은 상당수가 역시 직접수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이라는 이름의 매체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겸해서 듣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수용되고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라디오 매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연구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회의는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7분 폐회 】